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75~275p 번호 : 03	해설	03 ㉓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 보세운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25조 제1항). ㉔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적하목록 정정은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25조 제3항). ㉕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은 중량의 과부족이 5% 이내인 경우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26조 제1항). ㉖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반입화물의 수량에 대해 운항선사가 이상보고를 한 경우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27조 제1항).	03 ㉓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 보세운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12조 제1항). ㉔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적하목록 정정은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12조 제3항). ㉕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은 중량의 과부족이 5% 이내인 경우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13조 제1항 제3호). ㉖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반입화물의 수량에 대해 운항선사가 이상보고를 한 경우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14조 제1항)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